

안양동 342-50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 · 공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공람·공고 하오니 공람을 원하시는 분은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5일

안 양 시 장

1. 공람기간 : 2026.07.16. ~ 2026.07.31.
2. 공람장소
 - (1) 안양시청 주택과(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7층)
 - (2) 안양동 342-50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조합 현황
 - (1) 사업명칭 : 안양동 342-50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 - (2) 위치 :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42-50번지 외 31필지
 - (3) 구역면적 : 6,883㎡
 - (4) 조합원수 : 154명
 - (5) 사업시행자 : 안양동 342-50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임성식)
 - (6) 조합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5, 1207호(안양동, 도정오피스텔)
6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 - (1) 조합설립 추가 동의 : 7명(133명 → 140명)
 - (2) 조합원 변경 : 명의변경 17명
 - (3) 대의원회 변경 : 18명 → 22명
 - (4) 정관 변경 : 제4조(사무소), 제15조(임원), 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